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
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를 강원대학교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 2026. 3.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국립공주대학교 부설특수학교에 직업 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 방호·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9급 3명, 특수교사 7명), 경상국립대학교 부설중학교에 영양·식생활 교육 확대 및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영양교사 1명) 및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0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8명, 조교 15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거창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5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47명, 조교 18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립대학으로 편입된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의 행정·재정적 운영 지원과 기존 공립대학 캠퍼스 소관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한시조직에 필요한 인력 41명(4급 3명, 6급 14명, 7급 12명, 8급 12명)을 203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8.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99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③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26,982”를 “27,009”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20,825”를 “20,843”으로 하며, 대학 계 “19,092”를 “19,102”로 하고, 총장 “37”을 “36”으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6,180”을 “16,191”로 하며, 특수학교 계 “378”을 “385”로 하고,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362”를 “369”로 하며,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86”을 “87”로 하고, 영양교사 “30”을 “31”로 하며, 별정직 계 “27”을 “26”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8”을 “17”로 하며, 일반직 계 “6,130”을 “6,14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6,048”을 “6,058”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조 관련)

1. 제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총계	19
교육공무원 계	19
대학 계	19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4
조교	5

2. 제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총계	53
교육공무원 계	53
대학 계	53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8
조교	15

3. 제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총계	65
교육공무원 계	65
대학 계	65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47
조교	18

4. 제3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8
일반직 계	18

5급 이하	18
5. 제3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총계	41
일반직 계	41
4급 이하	4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u>99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u>100명</u> ----- ----- ----- ----- ----- ----- -----.
제3조(한시정원) ① (생 략) <u><신 설></u>	제3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u>

<u><신 설></u> ② (생 략)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 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 다.	③ <u>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 립남해대학을 통합하여 출범하 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 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 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u>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 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4항 및 제5항-----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982</u>	<u>27,009</u>	+27
교육공무원 계	<u>20,825</u>	<u>20,843</u>	+18
대학 계	<u>19,092</u>	<u>19,102</u>	+10
총장	<u>37</u>	<u>36</u>	-1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	<u>16,180</u>	<u>16,191</u>	+11
·	·	·	
·	·	·	
특수학교 계	<u>378</u>	<u>385</u>	+7
·	·	·	
·	·	·	
교사(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 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를 포함한다)	<u>362</u>	<u>369</u>	+7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u>86</u>	<u>87</u>	+1
·	·	·	
영양교사	<u>30</u>	<u>31</u>	+1

•	•	•	
•	•	•	
별정직 계	<u>27</u>	<u>26</u>	-1
고위공무원단	<u>18</u>	<u>17</u>	-1
•	•	•	
일반직 계	<u>6,130</u>	<u>6,140</u>	+10
3급 또는 4급 이하	<u>6,048</u>	<u>6,058</u>	+10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